

## 라. 정관 작성기준 및 정관 예시

### ① 정관 작성기준

#### 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 제1장 총 칙

-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2장 사 원

-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 제3장 임 원

-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 이상,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위된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다만, 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

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대표자의 유고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기록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 회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한 사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바.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 사.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권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3. 서면결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서면결의 허용 여부, 허용 가능한 경우 등)

##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여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1. 법인 해산을 위한 총회 의결 정족수는 최소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의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 정족수는 최소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 제1장 총 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2장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 이상,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겹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7.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9.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3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바.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자가 부의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 제5장 보 측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3.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한다.

## ② 정관 예시

### 사단법인 정관예시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시(도) ○○구(군) ○○로(길) ○○○ ○○ 빌딩 ○○○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 2.
- 3.
-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인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정한다.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궤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빌어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전술하는 일

**제16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결기판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재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입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불임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재단법인 정관예시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법인 사무소는 ○○시(도) ○○구(군) ○○로(길) ○○○ ○○빌딩 ○○○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 2.
- 3.
- 4.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두 수 있다.
3. 이사 ○명(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명  
※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 수 있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 없음.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에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결제처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8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3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5조(예산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제7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